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신구조문대비표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19	2)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라) 타 시·도	2)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삭 제>	불필요한 내용 삭제									
21	가. 이사회(理事會) 1) 이사회의 구성(법 제18조, 영 제8조의2 및 제9조, 공설법 제6조) ○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u>시·도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법 제18조제2항, '13.1.27시행, 이하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u> - 시행일 이후에 새롭게 선임(연임 포함)되는 임원부터 동 규정을 적용 (부칙 제3조) <신 설>	가. 이사회(理事會) 1) 이사회의 구성(법 제18조, 영 제8조의2 및 제9조, 공설법 제6조) ○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u>추천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u> <삭 제>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시행일에 따른 추천기관 <table> <tr> <th>구분</th> <th>~'18.4.24.</th> <th>'18.4.25.~</th> </tr> <tr> <td rowspan="3">추천 기관</td> <td>사회복지위원회</td> <td>시·도사회보장위원회</td> </tr> <tr> <td>지역사회복지협의체</td> <td rowspan="2">지역사회보장협의체</td> </tr> <tr> <td>지역사회보장협의체*</td> </tr> </table> *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만을 추천기관으로 규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추천기관으로 두고 있지 않았으나, 법 제처 해석[법제처 16-0179, 2016.7.27., 복지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추천 기관에 추가	구분	~'18.4.24.	'18.4.25.~	추천 기관	사회복지위원회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부추천이사 추천 배수 변경 및 추천 기관 변경 * 법령 개정 반영
구분	~'18.4.24.	'18.4.25.~										
추천 기관	사회복지위원회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box) ※ 법 시행에 따른 적용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시행일에 따른 추천 배수(倍數) - 시행일('18.4.25.)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추천기관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 시행일('18.4.25.) 이후부터는 3배수로 추천하여야 함 ※ 주의 : 사회복지법인의 추천요청 시점이 시행일('18.4.25.) 이전이라도, 실제 추천일이 시행일 이후라면 반드시 3배수로 추천하여야 함 (box) ※ 법 시행[시행 2013.1.27], [법률 제11239호, 2012.1.26, 일부개정]에 따른 적용 기준	
22	2) 외부추천이사의 구성 <신 설>	2) 외부추천이사의 구성 ○ 추천기관의 후보군 구성(법 제18조제8항, '18.4.25.시행) - 추천기관에서는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할 것 ①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③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후보군에서 제외하며, 최종추천자에도 포함될 수 없음(근거 :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8항('18.4.25.시행)) ○ 추천기관의 후보군 공고(법 제18조제8항, '18.4.25.시행) - 사회복지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추천기관의 외부 추천이사 후보군 구성 및 공고의무 기재 * 법령개정 반영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u>사회복지법인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추천 이사 후보군 공고방법에 대한 자체적인 세부 지침을 정할 것</u> 〈참고〉 추천기관의 업무처리지침 마련 시 고려사항 ● 후보군 구성 및 공고 : 추천기관은 공개모집이나 타 기관 추천 등을 통해 후보군을 작성·관리·업데이트 하고, 특히, 후보군은 분야별(예: 아동복지 분야, 노인복지분야, 장애인복지분야, 기타분야/ 시설운영분야, 지원사업 분야 등)로 구분하여 매년 공고 ※ 해당 지자체 거주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음 ● 이사 추천 수요 예비조사 : 추천기관은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해당 지역에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추천 수요를 사전에 조사(법인명, 법인 사업의 종류·내용, 추천필요 인원, 추천요청 예상 시기 등) ● 정식 추천 : 수요조사 이후 법인이 공식적으로 추천 요청을 해올 경우, 후보군에서 적절한 사람을 선정하여 추천·통보 ※ 지역사회복지협의체('18.4.25.부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 대표협의체를 통한 이사추천후보자명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실무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추천 가능(법인 이사추천위원회 등) ● 수요조사 이외에 추천 요청하는 경우(예측치 못한 선임사유 발생의 경우 또는 수요조사에 비해 추천 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등) : 추천 요청을 받은 후 가장 가까운 정기회의를 통해 추천자 결정·통보. 또는 정기회의가 요청 후 30일 이내에 없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통해 추천을 진행하는 방안 검토 ※ 실질적인 추천방법 및 절차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게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함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 법인의 추천 요청 -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u>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u> 중 한 기관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함 - <u>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u> 중 어느 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법인을 지도·감독하는 지자체에서는 행정업무 분담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법제처 16-0179, 2016.7.27., 복지부]에 따라 <u>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추천 기관에 추가됨</u> ※※ 예시 : 법인의 주사무소에 소재하는 <u>지역사회복지협의체</u>에 우선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이 이사 추천을 요청할 때는 서면(공문)으로 하되 공문에는 법인명, 주요 사업, 선임 대상 이사 수 등을 반드시 명기하고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 사업의 내용,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 추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영 제8조의2 제1항) ※ 추천 요청에 관한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u>추천기관인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등에서 업무처리 편의에 따라 별도의 양식을 정할 수 있음. 별도로 정하는 양식이 없는 경우 아래 예시 참조</u>	○ 법인의 추천 요청 -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u>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18.4.25.부터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일))</u> 중 한 기관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함 - <u>추천기관</u> 중 어느 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법인을 지도·감독하는 지자체에서는 행정업무 분담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삭 제> ※ 예시 : 법인의 주사무소에 소재하는 <u>지역사회보장협의체</u>에 우선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이 이사 추천을 요청할 때는 서면(공문)으로 하되 공문에는 법인명, 주요 사업, 선임 대상 이사 수 등을 반드시 명기하고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 사업의 내용,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 추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영 제8조의2 제1항) ※ 추천 요청에 관한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u>추천기관에서 업무처리 편의에 따라 별도의 양식을 정할 수 있음. 별도로 정하는 양식이 없는 경우 아래 예시 참조</u>	추천기관 변경 * 법령개정반영 중복내용 삭제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25	<참고> 외부추천이사제 <u>시행 관련</u>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치 사항 ○ 사회복지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세부 지침(법인의 추천 요청 기준, 요청 방법,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처리 지침, 추천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할 것 <기준 예시>	<참고> 외부추천이사제 <u>관련</u>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치 사항 ○ 사회복지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세부 지침(후보군 구성 및 공고방법, 법인의 추천 요청 기준 및 요청 방법,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처리 지침, 추천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할 것 <삭 제>	법령 개정에 따른 지자체 조치 사항 추가 중복내용 삭제
28	5) 의결정족수(공설법 제9조) ○ 이사의 의결권은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음 ※ <u>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는 사회복지법인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이사 자신들의 직접적인 토의와 결의를 요하고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대판 1957. 3. 22. 4290 행상 9 참고)</u>	5) 의결정족수(공설법 제9조) ○ 이사의 의결권은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음 ※ 「<u>사회복지사업법</u>」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와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u>사회복지사업법</u>」제32조에 따라 「<u>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u>」이 준용됨 - 「<u>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u>」 제9조제2항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고 규정함. 따라서 이사 본인이 직접 서면결의를 하는 것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 대리인의 선임을 통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결의하는 것은 더욱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법무부,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333쪽 참조)	이사 의결권의 대리 행사금지의 근거 명확화
30	6)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법 제25조, 영 제10조의3, 제10조의4) ○ 출석임원 전원이 회의록 및 회의조서 마지막 장에 <u>날인</u>함	6)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법 제25조, 영 제10조의3, 제10조의4) ○ 출석임원 전원이 회의록 및 회의조서 마지막 장에 <u>인감날인</u>함	이사회회의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문구 변경
32	다. 감사(監事) <참고>	다. 감사(監事) <참고>	「사회복지사업법」 상 직전 3회계연도의

[illegible]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8.10.25.시행」)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8.10.25.시행」)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8.10.25.시행」)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적용대상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공로연수기간 포함)의 기간 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의미하는 바, 5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직위와 관계없이 직제·직무 상 사회복지분야가 포함된 경우라 한다면 적용대상임 ※ 법 시행일 별 결격사유 적용시기 : 별지 참고	
43	가. 기본재산 처분허가(법 제23조, 규칙 제14조) <표> - 기본재산이 현금인 경우 용도변경이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아닌 방식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이 보장되지 않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신 설>	가. 기본재산 처분허가(법 제23조, 규칙 제14조) <표> - 기본재산이 현금인 경우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특히,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아닌 방식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이 보장되지 않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허가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 - 기본재산이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인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별개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에 따라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행위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승인 필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사항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됨 * 법인 관할 시·도와 보조금을 교부한 지자체가 다를 경우 중요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승인시, 보조금을 교부한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처리	내용 명확화 및 중요재산 처분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사항 기재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44	1)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 시·도지사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은 이후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처분이 완료되면 즉시 정관을 변경하고 인가를 받을 것 ※ 단, 허가조건이 명시된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를 받았다면 정관변경 인가 후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음	1)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 시·도지사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은 이후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처분이 완료되면 즉시 정관을 변경하고 인가를 받을 것 <삭 제>	불필요한 내용 삭제												
47	2) 정관의 변경 ○ 상기의 사유 등으로 법인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재산이 감소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체없이 정관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th><th>재산처분허가</th><th>정관변경</th><th>재산의 증감시점</th></tr> </thead> <tbody> <tr> <td>기본재산 처분 (재산의 감소)</td><td>필요</td><td>필요</td><td>정관변경인가 후 감소</td></tr> <tr> <td>재산의 취득 (재산의 증가)</td><td>불필요</td><td>필요</td><td>정관변경인가 후 증가</td></tr> </tbody> </table> ※ 단, 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연히 기본재산이 되므로, 취득시점을 재산의 증가시점으로 봄이 타당		재산처분허가	정관변경	재산의 증감시점	기본재산 처분 (재산의 감소)	필요	필요	정관변경인가 후 감소	재산의 취득 (재산의 증가)	불필요	필요	정관변경인가 후 증가	2) 정관의 변경 ○ 상기의 사유 등으로 법인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재산이 감소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체없이 정관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삭 제> <삭 제>	문구 수정(법령 반영) 불필요한 내용 삭제
	재산처분허가	정관변경	재산의 증감시점												
기본재산 처분 (재산의 감소)	필요	필요	정관변경인가 후 감소												
재산의 취득 (재산의 증가)	불필요	필요	정관변경인가 후 증가												
48	라. 수익사업(법 제28조) ○ 수익사업은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며(법 제17조제1항제8호),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정관변경인가 요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 - 사업계획서 1부 -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라. 수익사업(법 제28조) ○ 수익사업은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며(법 제17조제1항제8호),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정관변경인가 요청이 있을 시에는 다음의 서류 등을 종합검토하여 인가여부 결정 - 사업계획서 1부 -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문구 명확화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허가사실증명원 1부(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허가사실증명원 1부(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	
50	나. 법인해산(解散)의 사유(「민법」 제77조) 3) 설립허가의 취소(법 제26조) ○ 필요적 설립허가 취소사유 <u><신 설></u> - <u>기타</u> 부정의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 임의적 설립허가 취소사유 -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 <u>지원법인으로 허가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 또는 승인없이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부처 협의 또는 허가없이 의료, 교육, 문화 등의 사업을 임의로 수행시 등</u> -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나. 법인해산(解散)의 사유(「민법」 제77조) 3) 설립허가의 취소(법 제26조) ○ 필요적 설립허가 취소사유 - <u>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u> - <u>거짓이나 그 밖의</u>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 임의적 설립허가 취소사유 -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 <u>지원법인이 정관변경 인가 없이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정관 변경 인가 없이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u> <u><삭 제></u>	「사회복지사업법」 반영
62	<u><신 설></u>	<u>Ⅳ. 사회복지법인 업무의 전자화</u> 1. <u>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u> 2. <u>사회복지법인 온라인 보고</u>	사회복지법인 업무의 전자화 내용 추가 (본문 참고)
74	<붙임 6 : 사회복지법인 정관 (예시)> 제6조(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붙임 6 : 사회복지법인 정관 (예시)> 제6조(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u>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거나</u>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반영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80	<붙임 6 : 사회복지법인 정관 (예시)> 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u>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제32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u>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u>	<붙임 6 : 사회복지법인 정관 (예시)> 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u>각 사업마다 이사회의 의결 및 정관변경 인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u> <u>1. 부동산임대업</u> <u>2. 간행물발행사업</u> 제32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u>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목적으로 사용한다.</u>	수익사업 규정 예시 명확화 「사회복지사업법」 상 수익사업 관련 규정 준용
81	<붙임 6 : 사회복지법인 정관 (예시)> 제41조(규정의 제·개정) ① 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u>주요규정</u>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 중 <u>주요규정</u>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붙임 6 : 사회복지법인 정관 (예시)> 제41조(규정의 제·개정) ① 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u>규정</u>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 중 <u>규정</u>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주요규정’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이사회 의결절차 없이 법인 규정을 임의로 마련하는 것 방지
104	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1) <u>법인의 회계</u>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할 것 ○ 법인회계 : <u>법인의</u>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 시설회계 : <u>법인이</u>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 ○ 수익사업회계 : <u>법인이</u>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2)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함 ※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 시설을 <u>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회계는 각 시설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u>	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1) <u>사회복지법인의 회계</u>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할 것 ○ 법인회계 : <u>사회복지법인의</u>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 시설회계 : <u>사회복지법인이</u>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 ○ 수익사업회계 : <u>사회복지법인이</u>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2)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함 ※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 시설을 <u>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설회계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시설이 여러 개소인 경우 시설의 회계는 각 시설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u>	법인 및 시설회계의 구분 및 관리 명확화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109	아. 특정목적사업 예산 2) 방법 -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적립 불허	아. 특정목적사업 예산 2) 방법 <삭 제>	법령개정사항 반영
116	가. 후원금 1) 후원금의 범위 등 ※ 주의 최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후원금 부정·부당 사용, 횡령 등 사례가 수사기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 과태료 처분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법인·시설 관할 지자체에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후원금 사용과 관련한 위법사례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법인·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신 설>	가. 후원금 1) 후원금의 범위 등 주의 ※ 최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후원금 부정·부당 사용, 횡령 등 사례가 수사기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 과태료 처분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법인·시설 관할 지자체에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후원금 사용과 관련한 위법사례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법인·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준수 의무 명시
119	4)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신 설>	4)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후원금을 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이는 법 제45조와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것이 됨 → 이는 시행령 별표 4의 과태료 2. 개별기준 중 과목에 해당되어 과태료 300만원 처분대상임 ※ 후원금 용도 위반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에 이를 반드시 감안토록 할 것(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으로 인정(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후원금 용도위반 사용시 제재사항 기재 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 예방감시단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후원금 사용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①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의 세출 “목” 및 “내역”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될 것 -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은 지정용도로 볼 수 없음 * (예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로 사용할 것 ② 사회복지법인에 후원하는 경우 그 지정용도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권리·행위능력의 범위 내 일 것 - 예컨대,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의료기관 개설 등)을 수행 하라는 취지의 용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상 후원금으로 볼 수 없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기탁내용(후원약속사항)이 등록된 경우에만 회계 반영이 가능하도록 함('18년 하반기)	유의사항 안내
201	<사회복지법인 Q&A> <u>7. 사회복지법인의 분할</u>	<사회복지법인 Q&A> <u><삭 제></u>	불필요한 내용 삭제
206	<사회복지법인 Q&A> <u>12.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관련</u> ○ 법인에서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법 제18조 제5항) ○ 시·도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법 제20조 제2항)	<사회복지법인 Q&A> <u>11.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관련</u> ○ 법인에서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법 제18조제6항) ○ 시·도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법 제22조의3)	조항 오기 수정
212	<사회복지법인 Q&A> <u>17. 이사회 회의록의 인감날인 관련</u>	<사회복지법인 Q&A> <u><신 설></u>	인감날인 관련 답변 추가